

사모주선계약서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를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를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본 거래"라 한다)를 위한 사모주선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사모주선인의 지정 및 용역의 제공)

"갑"은 "갑"의 "본 거래"와 관련하여 사모주선인으로 "을"을 지정한다.

제 2 조 (사모주선인의 역할)

"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의 "본 거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한다.

1. 투자자 주선 및 청약 권유 업무
2. 투자자와의 원활한 협상 업무
3. 적절한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업무
4. 사모 발행에 대한 업무
5. 기타 유관기관 대상 업무
6.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외부인력 등에 대한 업무 조정 및 감독
7. 기타 본 거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 3 조 (계약기간)

본 사모주선계약의 만료일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거래" 사모 발행이 완료되는 날로 한다.

제 4 조 (수수료)

1. "갑"은 "본 거래"의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 (신한은행 150-000-039362, <예금주>신한투자증권(주))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수수료는 본 거래의 모집금액 금 사백팔십오억원(₩48,500,000,000)의 0.1%에 해당하는 금 사천팔백오십만원(₩48,500,000)으로 한다.

제 5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및 본 거래에 관한 정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과 "을" 또는 출자회사의 비밀이나 관련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규나 정부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요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면책)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결정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분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야기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11 조 (통지)

당사자간의 모든 변동사항은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사모주선계약서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갑" 및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06. 16.

갑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
법인이사 에스케이리츠운용 주식회사 (인)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사모주선계약서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갑" 및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06. 16.

을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대표이사 이 선 훈 (인)

